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투자신탁(UH) [채권]

- 변경 사유 :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②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2024. 9. 27.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요약정보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한국 기업에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율 변동,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한국 기업에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율 변동,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투자비용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	<u>2024. 8. 7. 기준</u> <u>2024. 7. 31. 기준</u>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8. 7.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u>2024. 8. 31. 기준</u>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 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 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u> <u>보호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 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 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 정사항 반영	원본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 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u> <u>지</u>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 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 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 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원본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 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따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 력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u>2024. 8.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u>2024. 8. 31. 기준</u>



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 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 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 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 호하지</u>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 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 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예금보험관계 표 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 정사항 반영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지</u> 않습니다. 따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 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 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 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 정기준 변경	<u>표준편차 : 8.20%</u> 〈신 설〉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u>표준편차</u>	<u>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 상액(97.5% VaR 모형 사 용) : 18.42%</u> - 위험등급 변경 내역 : <u>2024.9.27 :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 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 률의 표준편차”에서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기준으로 변경</u>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u>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u>								
11. 매입, 환 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기업공시서식 개 정사항 반영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신청 가능시간 〈신 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신청 가능시간 〈 <u>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 료 부과 여부</u> <table><tr><th rowspan="2">중도 환매 불가</th><th colspan="2">중도환매 허용</th></tr><tr><th>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th><th>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 지 않음</th></tr><tr><td>-</td><td>-</td><td>○</td></tr></table>	중도 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 지 않음	-	-	○
중도 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하 지 않음									
-	-	○									
13.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 항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	<u>2024. 8. 7. 기준</u> <u>2024. 7. 31.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 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 항] 분리과세한도 : <u>1,200만원</u> (공적연금소득 제외) <u>1,200만원</u>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 능 (단, <u>23.1.1</u> 이후 연금수 령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 항] 분리과세한도 : <u>1,500만원</u> (공적연금소득 제외) <u>1,500만원</u>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 능 (단, <u>24.1.1</u> 이후 연금수 령하는 분부터 적용)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8. 7.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8. 7. 기준</u>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제8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4. 8. 7. 기준</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 재 회사 연혁 추가	- <신 설>	<u>2024. 8. 31. 기준</u> <u>2022.11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u>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 업연도 요약 재 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 재	<u>제25기(2022.12.31)</u> <u>제24기(2021.12.31)</u>	<u>제26기(2023.12.31)</u> <u>제25기(2022.12.31)</u>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 모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u>2024. 8. 31. 기준</u>